

울산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3나1210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재판경과

울산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3나12104 판결

울산지방법원 2023. 3. 17 선고 2021가단5996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

담당변호사 박현갑

피고, 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운

변론종결 2024. 8. 22.

판결선고 2024. 10. 17.

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23. 3. 17. 선고 2021가단5996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는 울산 울주군 C 대 723㎡ 지상 제1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①, ②, ③, ④, ⑤, ⑥, ⑦, ⑧, ⑨, ⑩, ⑪, ⑫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 부분 81㎡ 내 시멘트 블록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및 블록조 담장을 철거하고, 위 토지 81㎡를 인도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을 제5, 6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영상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, 제1심판결 제3면 제7 내지 9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살피건대,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영상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)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연도를 특정할 수 없어 피고가 부친의 점유를 승계하더라도 20년 이상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

2. 결론

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설정은, 판사 유진현, 판사 박성규